## 예 산 총 칙

2019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     | 구 분     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  | 일시차입한도액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     | 합 계                 | 1,163,760,502 | 34,912,815 |
| 일반회계 |                     | 986,447,186   | 29,593,416 |
| 특별회계 |                     | 177,313,316   | 5,319,399  |
|      | 공기업특별회계             | 154, 120, 385 | 4,623,612  |
|      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         | 32,736,970    | 982,109    |
|      |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         | 55,105,877    | 1,653,176  |
|      |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         | 66,277,538    | 1,988,326  |
|      | 기타특별회계              | 23,192,931    | 695,788    |
|      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   | 294,000       | 8,820      |
|      |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         | 7,952,719     | 238,582    |
|      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       | 3,865,013     | 115,950    |
|      | 수질개선특별회계            | 6,947,224     | 208,417    |
|      |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        | 3,623,075     | 108,692    |
|      |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| 510,900       | 15,327     |

- 제 2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-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"해당없음"
- 제 4조 계속비사업은 "해당없음"
-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"해당없음"
- 제 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,317,862천원으로 한다.
- 제 7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2,000,000천원으로 한다.
-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